

##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충북을 바이오테크의 메카로 육성·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개최할 예정인 박람회의 명칭이 「국제보건산업박람회」에서 「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」로 변경됨에 따라
- 본 조례의 명칭과 조문 중 박람회 명칭 관련 규정을 새로이 확정된 박람회의 명칭과 같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조례명 및 법인의 명칭 변경
  -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  
⇒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
  -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 
⇒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

3. 의안전문 : 별 첨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없음

##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  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“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”를  
“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”로  
한다.

제1조 및 제3조제1호·제3호·제4호, 제5조, 제11조중 “국제보건  
산업박람회”를 각각 “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”로 하고, 제3조제2호  
중 “국제보건산업박람회장”을 “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”으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“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”를  
각각 “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<p><u>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</u></p>	<p><u>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<u>국제보건산업박람회</u>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<u>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</u>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<u>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</u>----- -----<u>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</u>----- -----</p>
<p>제2조(법인의 명칭 및 기구)</p>	<p>제2조(법인의 명칭 및 기구)</p>
<p>① 충청북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"<u>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</u>"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라 한다.</p>	<p>① ----- -----"<u>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</u>"----- -----</p>
<p>② 내지 ④(생략)</p>	<p>② 내지 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	<p>제3조(사업)-----</p>
<p>① <u>국제보건산업박람회</u>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② <u>국제보건산업박람회장</u> 부지 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③ <u>국제보건산업박람회</u> 조직, 운영과 자원조달 및 집행 ④ <u>국제보건산업박람회</u> 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⑤ (생략)</p>	<p>① <u>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</u> ---- ----- ② <u>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</u> --- ----- ③ <u>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</u> ---- ----- ④ <u>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</u> 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</p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운영비 등 지원)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비 및 <u>국제보건산업박람회</u>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운영비 등 지원)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u>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</p>
<p>제11조(공공시설의 사용) 도지사는 <u>국제보건산업박람회</u> 개최에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그 시설을 사용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공공시설의 사용) -----  <u>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